

# 감 사 위 원 회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도서실 관리·운영 소홀  
**관 계 기 관** 인재개발원  
**내 용**

「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규정」에서는 도서의 대출기간 및 해당 기간의 연장, 대출·반납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<sup>34)</sup>하고 있다.

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함)에서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도서실 관리·운영에 철저하여야 했다.

그러나 감사기간(2018. 4. 2. ~ 4. 20.) 중 인재개발원의 도서실 관리·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,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.

### 1. 연체율·연체기간 과다 및 반납독려절차 이행 미흡

인재개발원에서는 [표1]과 같이 최근 4년간('14.1.1.~'18.3.15.) 도서 대출 건수 총 10,031건 중 연체 건수가 5,141건으로 연체율이 51%에 달하고,

- 34) 제12조(대출기간) ① 도서의 대출기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한다.
1. 직원: 14일 이내
  2. 교육생 및 출강강사: 7일 이내
  3. 기타 승인을 받은 자: 7일 이내(단, 7일 이내 교육종료 시는 교육종료 전일까지)
- ②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도서담당자가 [별지 제3호] 서식에 소정사항을 입력한 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. 단, 교육생의 경우 교육 종료 전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재 편찬을 위한 연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.
- 제13조(대출의 제한) ①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도서에 대해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대출은 1인 1회 5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  - ③ 대출도서를 반납하기 전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한다.
  -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대상, 대출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5조(도서의 반납) ① 도서를 대출 받은 자는 제12조의 대출기간을 엄수하여 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② 도서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    1. 퇴직, 전출, 휴직, 장기휴가 등
    - 2.~4. 이하 생략
- 제16조(반납의 독촉) ① 도서를 대출 받은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인에게 도서 대출을 중지하고 [별지 제4호] 서식에 의하여 도서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.
- ② 반납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변상 조치하게 할 수 있다.

DVD 대출 건수 총 3,569건 중 연체 건수가 1,170건으로 연체율이 33%에 달하며, 감사기간 현재(2018.4.20.) 연체기간이 197일에 달하는 도서 또는 연체기간이 560일에 달하는 DVD 등이 존재하는데도 도서의 반납독촉 및 변상조치 등 관련절차 이행에 소홀하였다.

**【표1】 인재개발원 최근 4년간('14.1.1.~'18.3.15.) 도서 대출 및 연체 현황**

연도	구분	보유량(구입량)	대출 수량(A)	연체 수량(B)	연체율(B/A)	비고
계	도서	-	10,031	5,141	51%	'17.3.30. 이후 반납독려 등 절차 이행 관련 자료 없음
	DVD	-	3,569	1,170	33%	
2014	도서	37,072(1,552)	3,376	1,787	53%	
	DVD	2,723(686)	1,632	460	28%	
2015	도서	37,625(553)	1,919	1,135	59%	
	DVD	2,909(186)	915	299	33%	
2016	도서	38,075(450)	2,061	997	48%	
	DVD	3,107(198)	559	267	48%	
2017	도서	38,561(486)	2,175	981	45%	
	DVD	3,345(238)	374	117	31%	
2018. (3.15.기준)	도서	38,704(143)	500	241	48%	
	DVD	3,409(64)	89	27	30%	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## 2. 연체자 대출제한 미이행

또한 인재개발원에서는 기존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제한하지 않아, 감사일 현재('18.4.19. 기준) [표2]와 같이 연체자에게도 도서를 대출하였다.

**【표2】 대출제한 미이행 현황(2018.4.19. 기준)**

연번	성명	기 대출				재대출		미반납 (총 권수)
		권수(누계)	대출일	반납예정일	연체기간 (일수)	권수	대출일	
1	갑	4	'17.9.29.	'17.10.30.	171	2	'17.12.26.	7
		2(6)	'17.12.26.	'18.1.25.	84	1	'18.3.13.	
2	을	2	'17.10.26.	'17.11.27.	143	1	'17.12.28.	8
		1(3)	'17.12.28.	'18.1.29.	80	1	'18.1.2.	
		1(4)	'18.1.2.	'18.2.1.	77	1	'18.1.8.	
		1(5)	'18.1.8.	'18.2.7.	71	1	'18.1.24.	
		1(6)	'18.1.24.	'18.2.23.	55	1	'18.2.26.	

연번	성명	기 대출				재대출		미반납 (총 권수)
		권수(누계)	대출일	반납예정일	연체기간 (일수)	권수	대출일	
		1(7)	'18.2.26.	'18.3.28.	22	1	'18.3.2.	
3	병	1	'17.12.4.	'17.12.18.	122	2	'18.2.28.	3
4	정	1	'18.1.8.	'18.1.22.	87	2	'18.2.5.	3
5	무	2	'18.1.24.	'18.2.7.	71	1	'18.2.13.	6
		1(3)	'18.2.13.	'18.2.27.	51	1	'18.3.7.	
		1(4)	'18.3.7.	'18.3.21.	29	1	'18.3.19.	
		1(5)	'18.3.19.	'18.4.2.	17	1	'18.3.26.	
6	기	1	'18.2.6.	'18.2.13.	65	1	'18.2.8.	2
7	경	2	'18.1.31.	'18.2.14.	64	2	'18.2.14.	4
8	신	2	'18.3.14.	'18.3.28.	22	1	'18.3.23.	3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- <주> 1. 반납예정일의 경우, 대출기간이 연구원 30일·직원 14일 등으로 상이함에 따라 달라짐.  
 2. 대출 권수(누계)의 경우, 기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 합산·증가

### 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도서실 관리·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, 관련 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요구)